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가단51576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변론 종결2020. 11. 13.

판결 선고2021.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354,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354,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9. 29.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 2017. 12. 20. 체결된 변경계약, 2018. 1. 11.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 양수인 변경계약을 각 121,354,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354,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65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1. 1. "C는 원고에게 83,480,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한편, C는 2013. 9. 21.부터 2013. 11. 19.까지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이 특정한다) 및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2069m²(이는 2016. 10. 20. 이 사건 제4, 7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4. 9. 30.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C는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2014. 12. 11.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고, 2016. 11. 18. 그 신축공장인 이 사건 제8, 9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C는 2017. 6. 15. 이 사건 제8, 9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7. 7. 6. E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7. 9. 2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현재 신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업 관련 허가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문

"양도인(C)"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외 5필지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승인을 받아 허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인"은 천안시청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신규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양도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

(중략)

"양도인"은 현재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업 및 부수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사용·보유하는 특정 "자산" 및 관련 허가권만을 "양수인(F)"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고자 한다(이하 "본건 거래").

최종적인 "양도인"의 자산을 인수하는 주체는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관여하여 설립될 별도의 회사임을 확인한다.

이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본 계약의 내용 중 달리 명시되지 않은 이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양도대상사업"은 "양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에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도실행일"까지 완료할 "정부인가"와 관련된 폐기물재활용업, 퇴비생산업 및 판매업,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자산"이란 "양도인"이 사업 수행 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향이 있는 모든 재산, 자산과 계약, 합의 및 기타 약정에 따른 혜택을 말하며, 부동산, 지적재산,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포함한다.

제2조(양도대상자산 등의 범위)

2.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도실행일"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대상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산("양도대상자산")을 매도, 제공, 양도, 교부 또는 이전하고, "양수인"(양수인이 지정한 제3자 포함, 이하 같다)은 "양도대상사업"에 필요한 "양도대상자산"을 취득한다.

(1) 부동산: "양도대상사업"에 제공된 건물 및 토지("부동산")로서,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2.1(1)]와 같다.

(이하 생략)

제3조(채무의 인수)

"양수인"은 "양수도실행일"에 "양도인"의 채무 중 별지[3]에 기재된 채무(이하 "양수대상채무")만을 인수하고, "양수대상채무" 액수만큼 "자산양수도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별지[3]에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의 기타 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4조(자산양수도대금)

본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산양수도대금"은 "양수대상채무"를 포함하여 금 칠십팔억 원(7,8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한다. 명확히 하자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자산양수도대금"은 금 칠십팔억 원(7,800,000,000원)에서 "양수대상채무" 목록(별지3)의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제5조(자산양수도대금 지불방법)

5.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양도인"으로부터 (i) 별지 [5.1]에 규정된 서류를 교부받고, (ii)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양수인", 채무자 "양도인", 채권최고액 이십억이천팔백만 원(2,028,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계약금 십오억 육천만 원(1,56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위 계약금 중 일억원(100,000,000원)은 2017. 9. 29.까지, 나머지 십사억육천만원(1,460,000,000원)은 (i) 2017. 10. 27. 또는 (ii) 회계 실사를 거쳐 별지 목록이 모두 완성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5.2 "양수인"은 "양수도실행일"에 "양도인"에게 잔금 육십이억사천만 원(6,240,000,000원) 중

제5.3호에 따른 오천만 원(50,000,000원), "양수대상채무"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잔금지급일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을 경우 "양수인"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5.3 "양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수도실행일"로부터 6개월에 이르는 날까지 제5.2조의 잔금 중 오천만 원(50,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고, "양수도실행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남아있는 잔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마. F은 C에게 계약금으로 2017. 9. 29. 100,000,000원, 2017. 11. 21.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그 후 C는 2017. 12. 20. F과 사이에,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제5.1조 및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양수도대금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수정계약(이하 '2017. 12. 20.자 수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7. 12. 20. C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양수인은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일억원(₩100,000,000)을 지급하였다. 또한, 양수인은 2017. 11. 21.에 양도인에게 추가 계약금으로 이천만 원(₩20,000,000)을 지급하였다. 양수인은 본 수정계약 체결 후 양도인에게, 추가 계약금으로 오천만 원(₩50,000,000)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이로써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총 1억 7천만 원(₩170,000,000)을 지급하고,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서에 따른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양수인은 아래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인에게 중도금으로 자산양수도대금 중 사십억원(₩4,000,000,000)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가. 양도인은 본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E에 신탁된 충청남도 천안시 G 외 5필지 및 위 지상건물(이하 "신탁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이하 "수익권증서") 발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존의 2순위 우선수익자와 3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 획득을 포함한 모든 준비(이하 "수익권증서 발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권증서의 피담보채무는 포괄근담보형 우선수익권으로 하되, 채권최고액은 중도금 금액의 120%인 사십팔억 원(₩4,800,000,000)으로 한다.

나. 양도인은 "수익권증서 발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공문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양수인이 "수익권증서" 발급계약 체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양수인은 "수익권증서 발급을 위한 준비" 완료 통지를 수령한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수익권증서" 발급계약을 체결한다.

다. "수익권증서" 발급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즉시 "신탁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수익권증서"의 발급 및 교부를 받은 날, 양도인에게 중도금 사십억원(₩4,000,000,000)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3. 양수인은 "양수도실행일"에 양도인에게, 잔금으로, 남은 자산양수도대금 삼십육억삼천만원(₩3,630,000,000) 중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서 제5.3조에 따른 오천만원(₩50,000,000) 및 "양수대상채무" 액수와 본 수정계약서의 별지1에 기재하는 "신탁목적부동산"의 1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양도인의 실채무액총계(이하 "1순위 실채무액총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양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단, 별지1에 기재되는 "1순위 실채무액 총계"의 기준일은 "양수도실행일"로 한다.

사. H 합자회사는 F에 투자하기 위한 사모펀드로서, 2017. 12. 20. 주식회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위 합자회사는 F이 아닌 신설법인으로 하여금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 1. 8. F이 100% 출자하는 방식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아. 이후 C, F, 피고는 2018. 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양수인 변경계약(이하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1. 11. C에게 중도금 4,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양도인(C)과 양수인(F)은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에 따른

최종적인 양수인인 신규 양수인(피고)은 피고임을 확인한다.

3. 양도인과 양수인인은 E에 신탁된 충청남도 천안시 G 외 5필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신탁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신규 양수인인 피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수익권증서(이하 "수익권증서") 발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존의 2순위 우선수익자와 3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 획득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신규 양수인이 수익권증서의 2순위 우선 수익자로 지정되는 것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수익권증서의 피담보채무는 포괄근담보형 우선수익권으로 하되, 채권최고액은 중도금 금액의 120%인 사십팔억원(₩4,800,000,000)으로 한다.

4. 본 확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에 따른다.

5. 본 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인 양수인을 신규 양수인인 피고로 지정한 것 외에는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의 기존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

자. 피고는 2018. 7. 11. C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 실행을 위한 확인서(이하 '2018. 7. 11.자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잔금 3,630,0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 내지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J조합	(계좌번호 1 생략)	1,137,950,684
2	K조합자산지점	(계좌번호 2 생략)	701,371,232
3	L조합	(계좌번호 3 생략)	344,964,931
4	재산세(천안시청)	(계좌번호 4 생략)	7,591,110
5	취득세(천안시청)	(계좌번호 5 생략)	25,670,500
6	M	(계좌번호 6 생략)	65,000,000
7	C(7/11 지급)	(계좌번호 7 생략)	1,183,226,243
8	C(7/11 에스크로 지급)	에스크로계좌 개설	35,580,000
9	피고↔C 정산액	별도 정산	128,645,300(1)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선별기 대금 등 합계 166,799,300원은 C가, 콘크리트 파쇄비용 등 합계

1	J조합	(계좌번호 1 생략)	1,137,950,684
			38,154,000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C의 부담액 166,799,300원에서 피고의 부담액 38,154,000원을 공제하면 128,645,300원이 된다.
합계	3,630,000,000		

차. 2018. 7. 11.자 확인서에 따라 피고는 2018. 7. 11. 위 아.항의 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금액을 C가 지정하는 예금주의 계좌로, 같은 표 순번 7, 8번 기재 각 금액을 C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카. C는 2018.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2018. 7. 1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2017.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타. 이후 C는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천안시장은 2018. 6. 1.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하였다. 또한 C는 이 사건 제7, 8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설립(신설)등의 완료신고를 하였고, 천안시장은 2018. 6. 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파. C는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였고, 천안시장은 2018. 8. 3.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6, 8, 10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34, 36 내지 51, 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9. 29.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 피고가 2017. 9. 29.자 매매계약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과 이를 통해 피고가 승계한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2017. 12. 20.자 수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N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4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원리금이 합계 121,345,983원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9. 29.자 매매계약은 121,354,983원의 한도 내에서,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2017. 12. 20.자 수정계약 및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은 각 121,354,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1,354,9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은 피고가 아닌 F과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다.
- C는 감정가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채무변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실제로 그 양도대금으로 C의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통해 F과 C 사이의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가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의 양수인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2018. 1. 11. C 등과 사이에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이 아닌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내지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9. 29.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 중 2017. 12. 20.자 수정계약 및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이 사건 2019. 8. 21.자 답변서에서, 2017. 9. 29.자 양수도계약은 F이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2017. 12. 20. F이 C와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1. 피고와 C 사이에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을 피고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서와 2017. 12. 20.자 수정계약서 및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사실, 위 답변서와 계약서들이 2019. 8. 2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20.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2017. 12. 20.자 수정계약 및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의 채권자에 불과한 점,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2017. 12. 20.자 수정계약 및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의 내용과 위 각 계약 사이의 관계, 위 각 계약 체결의 경위 및 과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2019. 8. 21.자 답변서나 위 답변서와 함께 제출된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 20.자 수정계약이나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2019. 12. 20.) 이후에 2017. 12. 20.자 수정계약이나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이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내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가)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

원고는,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뿐 아니라 이를 통해 승계된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가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의 양수인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2018. 1. 11. C 등과 사이에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결과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이 아닌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내지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의 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다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5, 20,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8, 9 부동산의 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이 사건 제7 부동산을 제외한 이 사건 제1 내지 6, 8, 9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16. 12. 8. 기준 6,704,714,000원, 2018. 5. 28. 기준 6,166,973,000원이고,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 등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으로 정한 액수는 7,134,461,767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위 각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제7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7 부동산의 면적은 164m²로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의 면적 합계 22,696m²의 0.72% 정도에 불과한 사실,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에 따른 대금 중 2,282,548,457원(위 1.의 자.항 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금액의 합계액)이 C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5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피고로부터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 등에 따라 대금 중 5,388,806,243원[= 계약금 170,000,000원 + 중도금 4,000,000,000원 + 잔금 중 1,218,806,243원(위 1.의 자.항 표 순번 7, 8번 기재 금액의 합계액)]을 직접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나, 천안시장이 부과한 개발부담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C는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 등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C가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며, 위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호증, 을 제6, 7, 8,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이나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7. 12. 20.자 수정계약 체결 이전에 C와 피고 또는 F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F은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계약을 진행한 점,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 등에서 산정된 대금은 이 사건 제1 내지 6, 8, 9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염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 등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이 존재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이 크다고 인식할 만한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에 따른 대금 중 C와 피고 사이의 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직접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C의 채권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부 지급한 점, 피고는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 C로부터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승계하여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체결의 과정,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 등에서 C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한 의사록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것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선이행의무로 규정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제출받기로 한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의 실행에 착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 제7.1조가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성취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양수인은 제6조에 따라 본건 거래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면서 (7)호에서 "본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등 관련 법규상 요구되는 회사의 내부 승인을 모두 얻었고, 이를 증명하는 공증 이사회 의사록 및 공증 주주총회 의사록을 양수인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51, 54, 5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9. 29.자 자산양수도계약 등 체결 당시 C의 주주명부에는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O과 P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P 명의의株式이 주식회사 Q에게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은 C의 대표이사로서, P은 C로부터 F과의 매매계약금 처리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각 F 내지 피고와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체결의 과정,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이영은

별지

1) 2018. 1. 11.자 양수인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선별기 대금 등 합계 166,799,300원은 C가, 콘크리트 파쇄비용 등 합계 38,154,000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C의 부담액 166,799,300원에서 피고의 부담액 38,154,000원을 공제하면 128,645,300원이 된다.